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34

발의연월일: 2025. 6. 11.

발 의 자:김재섭·김장겸·김기웅

조경태 · 엄태영 · 최수진

강승규 • 박덕흠 • 서천호

김민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를 기만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용자의 자유로운 거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웹사이트 또는 앱 등을 교묘하게 설계하여 이용자를 유인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불리한 거래를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최근 일부 가상자산거래소가 수수료 할인 적용을 어렵게 하거 나 계약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방식으 로 거래를 설계해 소비자 피해와 부당이익 취득이 현실화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재하거나 다른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과태료나 처벌의 실효성이 낮아 사업자 입장에 서는 이익을 얻는 편이 오히려 '합리적인 전략'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교묘하게 설계해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의사결정을 방해한 경우, 부당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이익 획득을 방 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① 가상 자산사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 프트웨어로서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 이 하 같다)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이용자에게 수수료, 이용료, 중개료 등 그명칭이 무엇이든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받는 대가 또는 가상자산의 가격, 시세 등을 알리는 표시·광고의화면에서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가상자산의 가격, 시세 외에 거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유인하거나 이용자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총금액을 표시·광고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한다.

- 2.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그 밖의 거래(이하 "거래등"이라 한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이 진행되는 중에 이용자에게 다른 가상자산의 거래등,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직접 청약의사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여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다른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
- 3.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의 거래등이나,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이용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이하 "이용등"이라 한다)에 관한 선택 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그 선택항목들 사이에 크기·모양·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이용자가 특정 항목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나. 이용자가 이용등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이용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 가. 가상자산의 거래등,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
 - 나. 가상자산의 거래등,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

- 5. 이용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다만, 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아니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예방 및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관 련 분야의 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4항까지를"을 "제4항까지 또는 제12조의2제1항을"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통보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2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
	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
	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 사이
	의 매개체를 말한다. 이하 같
	다)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이용
	자에게 수수료, 이용료, 중개
	료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가
	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가상
	자산사업자가 받는 대가 또는
	가상자산의 가격, 시세 등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화면에
	서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거래
	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
	하여야 하는 총금액(가상자산
	의 가격, 시세 외에 거래 서
	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유인하거나 이용자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한다.

- 2.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그 밖의 거래(이하 "거래등"이라 한다), 회원가입, 계약체결등이 진행되는 중에이용자에게 다른 가상자산의거래등, 회원가입, 계약체결등에 관한 청약의사가 있는지역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경우 이용자가 직접 청약의사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하여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다른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유인하는 행위
- 3.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의 거래 등이나,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이용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이하 "이용등"이라 한다)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그 선택항목들 사이에 크기·모양·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표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 가. 이용자가 특정 항목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잘

 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나. 이용자가 이용등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특정 항 목을 반드시 선택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이용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 해하는 행위
 - 가. 가상자산의 거래등,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 계하는 방법

나. 가상자산의 거래등, 회원 가입, 계약체결 등의 방법 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

5. 이용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결정 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다만, 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이용자가 대통령 링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아니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경우는 제외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 하는 행위의 예방 및 이용자보 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관련 분야의 당사자, 기 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 할 수 있다. 제17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0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성당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성당하는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제1/소 <u>(과상금)</u> ①
제4항까지 또
는 제12조의2제1항을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벌칙) ①

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 다.

1. ~ 4. (생 략) <u><신 설></u>

② ~ ⑥ (생 략)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8. (생략)

②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을 통보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과태료) ①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